

‘평창올림픽의 심장’ 선수촌 착공

용평돔경기장 주변 4만2천㎡
3,500명 수용… 2017년 9월 완공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선수촌을 조성하기 위한 착공식이 22일 실시됐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와 (주)용평리조트는 이날 평창군 대관령면 용평돔경기장 일원에서 조양호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심재국 평창군수, 정창주 용평리조트 대표, 구닐라 린드버그 IOC 조정위원장과 IOC위원 10명,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 선수촌 착공식을 개최했다.

평창 선수촌은 2017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용평돔경기장 주변 4만2,000㎡ 부지에 용평리조트가 1,800억원을 투자해 8개 동 600세대 3,500여명의 선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된다.

올림픽 후 민간 주거시설로 일반 분양 될 평창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오는 10 월부터 청약이 시작된다. 정창주 용평리조트 대표는 “평창 올림픽 선수촌으로서 완벽한 기능을 다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올림픽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창=김영석기자kim711125@



◇‘제2회 사랑의 바자회&콘서트’ 기부릴레이에 동참한 김대호 춘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이 22일 춘천상공회의소에서 문화프로세스 모놀 김혜숙 대표에게 애장품 기부 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김대호 춘천상공회의소 회장·박수복 강원지방변호사 회장

사랑의 바자회&콘서트 기부 잇따라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송정부)와 프로세스 모놀(대표: 김혜숙)이 주최하는 ‘제2회 사랑의 바자회&콘서트-명사 애장품 기부’의 참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2일에는 김대호 춘천상공회의소 회장과 박수복 강원지방변호사회장이 바자회 기부금을 기탁했다.

김대호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은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도록 힘쓰겠다”고 밀했다. 박수복 강원지방변호사회장은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작은 힘이 돼 행복하다”고 했다. 강원일보사가 후원하는 ‘제2회 사랑의 바자회&콘서트’는 다음달 3일 춘천(부산 방향)휴게소에서 나눔바자회와 클래식 콘서트로 진행된다. 최영재기자

정부, 공공조달 혁신 방안 확정

‘기술인력’ 고용 안하면 수주 못한다

등록기준 미달땐
낙찰대상서 제외
계약 후라도 해지

건설기술용역에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보유 기술인력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낙찰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다. 또 내년에는 소위 ‘스펙 박기’ 등을 통한 특혜 및 입찰 비리를 막기 위해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가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7면

이번 방안은 연간 110조원 규모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을 기반으로 첨예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적극적인 고용창출,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조달청에만 의무화된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를 전 공공기관(자체 발주)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특정 규격’을 반영해 특혜 시비나 입찰 비리를 유발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조달청은 내년 하반기까지 5000만원 이상 경쟁입찰 시 구매규격 사전공개 의무화를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그간 예산 낭비의 온상으로 지적됐던 민간 수행 국고

NEWS & ‘공공조달 혁신방안’ 업계 반응

“기술자 보유 위반 등 제재 조치 최고가치제 등 조기시행 필요”

연간 110조원 규모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이번 혁신방안에 건설 및 관련 업계도 적지 않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업계는 사전규격 공개제도 확대와 기술인력 보유기준 강화,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등 크게 세 가지 세부 추진대책에 주목하고 있다.

소위 ‘스펙박기’이라 불리는 임의적 특별 규격 반영으로 인한 피해가 그만큼 심각하고,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업체들이 활개를 치면서 입찰 전진성도 크게 훼손돼 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설계, 감리 등 기술용역과 문화재 수리 등 고도의 기술력 중심의 소규모 시설공사도 저가경쟁으로 인한 부실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관련 업계는 전반적인 제도 도입

(개선) 및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그와 더불어 제재나 처벌규정 등 보다 실천적인 후속조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 확대시행 및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이 각각 내년 하반기와 오는 2017년 시행으로 예정돼 있으나, 보다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속된 경기침체와 공공발주물량 감소로 인해 당장의 피해가 누적된 데다, 제도 도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관리 및 점검 등 철저한 후속조치가 수반돼야 하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협행 제도에서도 스펙박기나 저가경쟁 방지대책은 일정부분 마련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행 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며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조기 연착륙을 통한 입찰시장의 정상화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특히 기술자 보유기준 위반이나 스펙박기에 따른 편법, 불법 사례와 관련해서는 보다 엄격한 처벌 및 제재수단도 시급하다고 업계는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지난 2012~2014년 3년간 매년 1000개에 가까운 업체가 기술인력 보유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드러나지 않은 자격증(면허) 대여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낙찰 배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뿐 아니라, 위반 업체나 부당이득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및 처벌규정 등 후속조치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업계는 덧붙였다.

봉승권기자 skbong@

보조금 및 R&D 사업에 대한 계약도 정부조달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고보조금 2억원 이상의 공사와 5000만원 이상 물품 및 용역구매 등도 조달청에 계약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 경우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계약-대금지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조달 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건설공사의 경우 안정적 기술인력 고용 유지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법적 의무고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적정 기술인력 보유가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규정돼 있지만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준 미달 업

체에 대해서는 낙찰 배제 및 계약 해지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는 또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 규제 완화와 전문성 및 기술력 보유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각종 인증 평가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다수공급자 계약(MAS) 기간을 최장 10년(현재 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과 문화재 수리 등 소규모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까지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저가 경쟁이 불가피한 가격 위주의 적격심사 대신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점수를 종합적으로 평

가해 낙찰자를 가리는 수행능력 우선심사 방식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발주처별 예산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기준기액을 통일하고, 수요기관의 규칙 사용으로 인해 과업 변경이 이뤄질 경우 업체에 불리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공공조달 혁신방안은 국가와 공공기관의 효율적 사업 집행은 물론, 30만 조달기업의 성장기반이 될 것”이라며 “차질없는 후속조치로 공공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신규 고용창출과 산업경쟁력 제고 등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장기계속계약서 계속비계약으로 변경시 공기연장비용 청구에 영향 미칠까?

최근 공사계약의 중대한 요소인 계약방식을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한 것은 ‘경개’에 해당하므로, 변경계약에 따라 변경 전의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는 소멸하고 변경계약에 따른 새로운 채무와 총공사기간이 정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변경계약 후에는 총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으므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간접비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해당 판결은 민법 제500조 소정의 ‘경개’라 함은 기존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기존 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할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 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9119 판결, 대법

원 2011. 3. 10. 선고 2010다86655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기초하여, ① 해당 사건의 변경계약은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일 뿐 기존의 채무를 정산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 아닌 점, ② 변경계약상 공사와 관련하여 변경 전 계약 내용을 폐기한다거나 그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모두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 방식이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변경계약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변경계약에 기한 새로운 채무만을 부담시키기 위한 경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5. 9. 9. 선고 2013가합565635 판결).

동 판결은 계약기간 중 계약 형태가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간접비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상급심의 판단을 지켜보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각각의 구체적인 변경계약 및 계약 금액조정 시에 변경 전의 공사대금을 계약 내용에 반영시키는 등 보다 엄격한 계약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2015.09.23(수) 건설경제 】

시론

이인근
N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종합심사낙찰제가 성공하려면

우리나라 공공공사의 입찰 제도는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가 실종된 상태에서 경제 여건 변화, 대형 사고 발생 그리고 업계 안팎의 요구에 따라 가격경쟁 중심 낙찰 방식과 적격 심사 방식의 도입, 확대, 폐지를 반복해 왔다. 그 결과 현재 공공건설 시장은 극심한 경쟁, 수익성 저하, 입찰 담합에 따른 무더기 제재와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얼룩져 있다. 이러한 와중에 내년으로 예정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본격적인 도입은 시설공사 발주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을 잠재우고 업계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종심제는 최저가낙찰제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 즉 기술력 평가 미흡, 운찰적 속성, 덤핑,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으로 공사 수행능력, 입찰 금액, 사회적 책임, 계약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종심제 적용 시범사업은 올해 4대 SOC 공기업에서 총 30건을 선정하여 지난해 대비 두 배 정도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지금까지 시행된 시범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낙찰률 상승으로 가격평가 방식에 따라 유동적일 수도 있으나 예산 절감을 우선 고려하는 발주기관과 적정공사비 확보를 요구하는 업체의 요구가 수렴되는 78~80% 수준에서 낙찰자가 선정되고 있다. 또한 정부와 발주기관은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중소건설사에 대한 진입 장벽, 일부 업체의 수주 독점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만점 구간 축소, 단가 심사 미실시 등을 통해 가격평가 기준을 다양화하고 공동수급체 참여 심사 항목을 신설하였다.

한편 올해 초 600개가 넘는 업체들이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한 바 있는 건설업

계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낙찰률이 상향되면서 전반적으로 종심제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이 늘어났으나 여전히 기업 규모, 시공 실적에 따라 그룹별로 특성을 따지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 이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건설업계는 덤핑입찰 예방, 적정공사비 제공, 운찰제 방지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종심제 시행이 현장 품질향상과 안전시공, 설계변경 축소, 공사기간 준수 등 사업성과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변별력 확보와 담합 방지 를 위해서는 다소의 보완이 필요하며 기존 제도에 비해 투명성, 낙찰 기회의 균등성이 하락하면서 특정 그룹에 유리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시범사업은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주체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때, 본격 시행에 앞서 적극 검토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가격평가의 변별력이 낮아 공사 수행능력 평가결과가 낙찰자 선정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일부 업체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으므로 평가부문 사이의 변별력이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 실적 위주의 간접 평가에서 나아가 입찰 대상 공사에 대한 참가자의 이해도와 수행계획을 직접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공사 여건을 반영한 기술적 차별성이 부각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리고 평가기준에 있어 종심제와 중복되는 요소를 가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의 관계 역시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공공 부문에 관련된 여러 주체들의 인식 변화와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 그간 공공 발주자들은 감사 혹은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획일적 입찰 방식을 적

용해 왔다. 이제 책임성을 바탕으로 공사 특성에 맞는 최적의 발주기준을 선정하고 참가자들의 기술력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발주자의 노력이 없으면 종심제 또한 획일화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 역시 변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시범사업에서 투찰률이 기준단가 산정 방식과 단가심사 감점 범위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 수렴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과거 전략적 투찰의 관성이 이어지고 있다.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각 업체는 정부의 인위적인 물량 배분이나 운운 기대기보다는 차별화된 기술전략 수립과 공사비 산정이 가능하도록 경쟁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범사업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현실의 테두리 안에서 장기적 관점의 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즉 종심제로부터 출발한 발주 제도 변화가 건설업계 전반의 기술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시설공사 발주 제도는 그 나라 건설업계의 맨 얼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 건설산업은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도구로 빈번하게 활용되면서, 산업 기저에 자리 잡은 후진적 요소를 바로잡을 기회를 여려 번 놓쳤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종심제가 얼마 남지 않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산업의 장기 목표에 대한 상호 공감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해법을 찾아,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당초 의도했던 결실을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